

고흥군의회 공고 제2025-16호

「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5년 7월 9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고흥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을 통해 본회의·상임위 등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,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고흥군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(안 제2조제1항)
 - (기존) 고흥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.
 - (개정) 고흥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5일 이내로 한다.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5. 7. 9. ~ 7. 15. (6일간)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 중 “110일”을 “115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연간 회의 총일수) ① 고흥군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<u>110일</u>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가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연간 회의 총일수) ① ----- ----- ----- <u>115일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